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고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국내 소비용 수산물 생산해역 및 생산·가공시설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생관리기준)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의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국내에서 생산·소비되는 수산물 중 이매패류, 극피류, 피낭류 및 복족류를 생산하는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생산해역의 조사·모니터링) ①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은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생산해역 위생관리기준의 마련·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역에 대한 조사·모니터링

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모니터링은 생산해역의 수질 및 오염원, 유해물질 잔류조사, 생산되는 수산물의 위해요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조사·모니터링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전년도 결과와 함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위생관리기준에 대한 조사·점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의 위생관리기준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라 조사·점검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